소규모펀드 수시공시

1. 대상 펀드

- JP모간글로벌이머징마켓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발생일자 : 2015년 12월 31일

3.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시행령제93조(수시공시의방법등)
제3항제5호에의거하여사모집합투자기구가아닌집합투자기구가설정하고1년이지난후1개월간계속하여원본액이50억원미만인경우그사실과해당집합투자기구가법제192조2(투자신탁의해지)
제1항단서에따라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해지될수있다는사실을수시공시해야함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따라1개월공시1회시행후해당사실이변경될경우(원본액50억초과등) 추가공시

4.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 해당사항 없음